

시간이수교육 운영기준(규정 제15조제2항 관련)

구 분	시간이수교육 운영기준
1. 기본사항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10px;"> <p>○ 시간이수교육 본 규정은 운영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을 위해 과목(시간)이수제를 도입함으로써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/div> <p>가. 연간 교육일정 및 교육운영 세부사항을 교육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한다.</p> <p>나. 과목별(시간별) 또는 강좌별로 수강신청 방법</p> <p>다. 교육수강 및 교육이수조건 등</p> <p>나. 교육형태</p> <p>나. 교육기관에서 정한 해당 연도 전문교육과정(Off-Line 교육)의 교육일정에 따라 수강신청하고 과목별(시간별) 또는 강좌별로 이수조건을 충족해야 한다.</p> <p>다. 이수기간은 교육개시 해당 연도에 한한다.</p>
2. 수강신청	<p>가. 수강신청 : 기수별(회차별) 교육과 동일시기에 신청</p> <p>나. 수강과목 : 연간 교육일정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시간(기간)의 교과목 선택</p> <p>다. 시간이수교육을 신청 수강할 경우 교육과정별로 교과목을 달리하여 주간·야간 과정에 대하여 교차 수강가능.</p> <p>단, 동일 교과목에 대하여는 주간·야간 교차수강 불가.</p>
3. 교육수강	<p>가. 교육생은 총 교육이수의 80% 이상 수강해야 한다.</p> <p>나. 과제평가는 기수별(회차별) 교육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.</p> <p>다. 교육생은 해당 교과목에 대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해야 한다.</p>
4. 평가방법	<p>가. 평가일시 및 기준은 교육과정 시작 전에 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등으로 공지한다.</p> <p>나. 기수별(회차별) 교육생과 동일한 수료평가방법 적용</p> <p>다. 수료평가 : 학습평가(60%)+과제평가(20%)+근태평가(20%) = 70%이상 ⇒ 교육수료증 발급</p>
5. 이수기준	<p>가. 교육시간 80%이상 이수 및 과제물 제출</p>